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20.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주택건설 공급과	담당자	• 과장 김경현, 사무관 육인수, 주무관 이은일 • ☎ (044) 201-3369, 3373	
보 도 일 시		2020년 11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11. 2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

-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...23일부터 행정예고 -

□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(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)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 고시 개정안을 10일간(20.11.23~12.3) 행정예고 한다.

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

-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+ 등급 이상으로 상향*한다.

* 에너지절감률 60% 이상 → 63% 이상으로 3%p 강화된 수준

- 국토교통부는 '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'를 목표로 '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,

- '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.

* (현행)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→ ('21.7월~) 1+ 등급 → ('25년~) 1++ 등급
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('19.6, 「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」)

- ▶ (의무화 로드맵) ('20년) 1,000㎡ 이상 공공 → ('25년) 500㎡ 이상 공공, 1,000㎡ 이상 민간,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→ ('30년) 500㎡ 이상 모든 건축물
- ▶ (인증 요건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 이상 &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

- 한편,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'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'으로 일원화한다.

- 그간 「주택법」과 「녹색건축법」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'에너지절감률'과 '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'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.

②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

- '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*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,

*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

-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·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특히, **환기설비**의 경우 자연·기계·혼합형(자연+기계)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**에너지 저감성능**(열교환효율 등)을 면밀히 분석하여 **실제기준**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현 과장은 “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**기후변화 대응**을 위한 **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**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, **에너지비용 절감**으로 장기적인 **주거비 부담***도 줄어드는 **1석 2조의 효과**가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* 시뮬레이션 결과, 세대(84㎡ 기준) 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.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

□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,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**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**할 예정이며,

○ 개정안은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(www.molit.go.kr)에서 ‘**정보마당-법령 정보-입법예고**’를 통해 **확인**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**2020년 12월 3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**을 통해 **의견을 제출**할 수 있다.

※ **의견 제출기간** : '20.11.23. ~ 12.3.(10일간)

의견 제출처 : ☎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☎ 044-201-3373, Fax 044-201-5684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사무관(☎ 044-201-336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